

『2026년 전북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지역정착형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계획 공고

전북테크노파크 바이오진흥센터에서는 전북연구개발특구 내 창업기업의 신규 고용 창출을 촉진하고 청년·전문인력의 정읍시 정착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북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지역정착형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2월 25일

(재)전북테크노파크 원장

1 지원개요

□ 사업목적

- 특구 내 창업기업의 신규 인력 채용 부담을 완화하여 고용 창출을 촉진하고, 지역 인력의 안정적 정착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바이오산업 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 (세부내용은 2 페이지 참고)

- 정읍시 관내 지역혁신기관 창업보육동, 첨단복합문화센터 코워킹스페이스, 공유인프라 입주기업 중 2년 이내 신규채용 인원(2024. 1월 이후 채용자) 또는 본 사업을 통해 신규 채용 예정인 바이오 기업

□ 지원규모 : 10명 내외 (기업당 1인 지원 원칙)

- 근로자 1인당 월 500,000원 정액 지원 (최대 10개월 / 총 5,000,000원 한도)
* 예산 범위 내 선착순 또는 요건 충족 기업 우선 선정 및 지원기간 중 중도 퇴사 시 해당 시점 이후 지원금 지급 중단

□ 지원기간 : 2026. 2. ~ 2026. 11. (10개월)

2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 2026. 2. 25.(수) ~ 3. 6.(금)

□ 접수기간 : 2026. 2. 25.(수) ~ 3. 6.(금)

* 정기 접수 기간 종료 후 2026. 5. 29.까지 수시 접수 운영(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방법 : 방문제출

○ 접수처 : 전북TP 바이오진흥센터(정읍시 첨단과학로 201, 1동 2층)

○ 제출양식 : 붙임 참고

□ 제출서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연 번	제출서류	비 고
1	사업신청서	붙임 1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근로계약서 및 채용계획서	
4	4대 보험 가입(예정) 확인자료	
5	주민등록등본·초본(거주지 확인용)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7	중복지원 금지 협약서	붙임 2
8	바이오산업 관련 사업 수행 여부 확인서	붙임 3
9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붙임 4
10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붙임 5
11	평가결과 수락 협약서	붙임 6

3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 ① 지역혁신기관 창업보육동(첨단방사선연구소 RFT 실용화 연구동, 국가독성 과학연구소 전북상생지원센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 이노비즈센터, 농축산용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창업보육실), ② 정읍첨단복합문화센터 코워킹 스페이스, ③ 농축산용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공유인프라 입주기업
- 2년 이내 신규채용 인원(2024. 1월 이후) 또는 본 사업을 통해 신규 채용 예정 기업

* 코워킹스페이스의 경우, 상주 근무자 채용 기업에 한하며, 지원금은 해당 상주 근무자에 대한 인건비에 한하여 지급

■ 지원제외 대상 기업

1.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연구, 기술개발, 생산, 서비스 또는 사업화를 추진하지 않는 기업으로, 제출 서류를 통해 관련 사업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2. 연구개발특구, 전북테크노파크, 정읍시 지원사업 등에서 사업비 유용 및 허위 정산 등으로 제재 조치를 받아 현재 참여제한 기간 중인 기업
3. 휴업·폐업 중인 기업
4.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기업
5. 동일 근로자에 대하여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타 인건비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중인 경우
6. 대표자 또는 특수관계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을 채용한 경우
7. 4대 보험 미가입 근로자 또는 형식적 고용이 확인된 경우

□ 지원조건

- 정규직 근로자(채용 예정자 포함)로서 지원 개시일¹⁾ 기준 정읍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를 채용한 기업
- 지원기간 중 근로자가 정읍시 외 타 지역 전출 시 해당 월부터 지원을 중단하며, 허위 사실 확인 시 지원금 환수
- 근로자가 월 중 입·퇴사한 경우, 해당 월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고용 관계가 종료된 경우, 종료 시점 이후 지원금 지급 중단

4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500,000원 정액 지원
- 최대 10개월 지원(총 5,000,000원 한도)
- 기업당 최대 1인 지원 원칙

□ 지원방식

- 기업이 근로자에게 급여를 선지급한 후 사후 정산을 통해 지원금 지급
- 1차 정산 : 2026. 7월(2~6월분) / 2차 정산 : 2026. 11월(7월~11월분)

1) 지원 개시일은 해당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1일로 하며, 사업 승인 이후에 한하여 인정함.

□ 제출 증빙자료

- 근로계약서
-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및 고용보험 취득 확인서
- 급여대장 및 급여 이체 증빙
- 근태관리자료
- 주민등록등본·초본(거주지 확인용)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관련 사항

- 지원금은 월 500천원 정액 지원으로, 급여 수준과 무관하게 동일 금액 적용
- 기업은 근로자에게 급여를 선지급하여야 하며, 급여 미지급 또는 지연 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지급을 제한
- 정산 시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보완 요청 또는 해당 기간의 지원금 미지급
- 허위 서류 제출, 허위 고용, 부정 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된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

5

지원절차 및 선정방법

□ 지원절차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정방법

- 자격요건 적격 여부 검토(정량 검토 중심)
- 예산 범위 내 요건 충족 기업 우선 선정

6

유의사항 등

□ 유의사항

- 신청서 오기재 등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
- 선정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이 있을 수 있음.
- 선정평가 이후 과제 수행 중에도 지원제외 대상임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할 수 있음.
 - 본 사업 취지 목표와 상이한 경우 지원 제한
 -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중인 제안자 또는 제안기업이 신청한 경우 지원 제한
 - 기업의 부도 또는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 이행 경우는 예외)
 - 최근(2025년) 결산 기준 완전자본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타 사업 참여 사업 중 지원 분야 중복 건 지원 제한

□ 공지

- 제출된 서류 및 사업신청 내용이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 기타 신청서류 허위기재, 누락사항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등 과제 수행기업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자(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기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부정청구에 대한 제재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0.1.1.)에 따라 각종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거나 원래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경우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됨.

* 제재부가금

- ① 허위청구(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금 등을 청구하여 받은 경우): 받은 지원금의 5배
- ② 과다청구(받아야할 지원금 등 보다 초과청구하여 받은 경우): (받은 지원금-원래 받아야 하는 지원금)의 3배
- ③ 목적 외 사용(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한 경우):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 외 달리 사용한 지원금)의 2배

사업신청, 용역, 구매, 공사 등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을 요구할 경우에는 (재)전북테크노파크 고객센터(063-219-2299) 또는 홈페이지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는 부패방지 관련 법률 등에 의거 신분비밀보장을 받게 됩니다.

7

문의처

소 속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이메일
전북TP 바이오진흥센터	바이오진흥팀장	김태한	063-534-5111	poolant@korea.kr
	협력위원	방경곤	063-534-5112	eddy486@korea.kr